

# 순천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8. 2. 29.      개정 2008. 9. 16.  
개정 2010. 10. 27.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지리산권 문화연구단(이하 “연구단” 이라 한다)의 HK연구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

제2조(정의) HK사업 연구교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27, 2014. 02. 11)

1. “인문한국교수(HK교수)” 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4조(HK교수)에 따라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된 자 또는 정년보장에 준하는 조건의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트랙의 교수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02. 11)
2. “인문한국연구교수(HK연구교수)” 는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5조(HK연구교수)에 따라 연구전임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02. 11)

제3조(자격 및 구분) ① HK교수·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연구실적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0. 27)

② HK교수는 HK정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세분한다.(개정 2013. 02. 22)

제4조(직무) ① HK연구교원은 이 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

- ② HK연구교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 등은 이 대학교 교원 복무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 10. 27)
- ③ HK연구교원은 강의를 담당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리산권문화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HK교수는 주당 3시간, HK연구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지리산권 문화 연구) 관련 강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0. 10. 27, 단서 신설 2013. 02. 22)
- ④ HK연구교원은 해당 HK연구소 소속으로 임용되어 상근하며, HK 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2. 22)
- ⑤ HK교수는 연구단 운영위원으로 연구단 운영 및 연구 활동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신설 2013. 02. 22)

제5조(임용) ① HK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신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4. 02. 11)

- ② HK연구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신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되, 공개채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02. 11)
- ③ HK연구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지리산권문화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신규채용을 제청한다.

1. HK연구교원 활용계획서 1부
2. 신규채용 연구실적물 자격조건 및 기타 요구경력 1부
3. 향후 연구사업계획서(3-4년) 1부

④ HK연구교원은 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인사위원회

(이하 " 연구원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거쳐 계약 임용하되, HK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0. 27, 2013. 02. 22)

제6조(임용기간) ① HK연구교원은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당해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HK교수는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14. 02. 11), (개정 2014. 7. 24)

② 승진 임용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HK교수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에 한해 해당 임용기간의 업적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02. 11)

제7조(승진 및 정년보장) ① HK교수는 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제18조 및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연구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0. 10. 27, 2013. 02. 22, 2014. 02. 11)

② HK교수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는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통합운영규정」 별표1의 2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4. 02. 11)

③ HK교수는 사업종료 이전에 50퍼센트 이상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임용하고, 사업 종료 이후 동일한 절차에 의거해 나머지 인원의 정년보장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2014. 7. 24)

④ 정년보장HK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9편을 포함한 1,200퍼센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충족하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0. 10. 27)

제8조(처우) ① HK교수는 대우 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및 그 밖의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개정 2013. 02. 22)

② HK연구교수는 대우조건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 전임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다. 다만, 보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02. 22)

③ (삭제 2014. 02. 11)

④ HK사업 종료 시 정년보장이 확보된 HK교수는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 소속되며, 정년보장 HK교수의 보수는 이 대학교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⑤ HK사업 종료 후 소요 예산은 연구원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기부금 및 대학교의 각종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 2014. 7. 24)

제9조(면직) ① HK연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 또는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연구 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질병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삭제 2014. 02. 11)

제10조. (신설 2014. 02. 11, 삭제 2014. 7. 24)

제11조(준용기준 및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HK교수의 대우, 보수, 복무 등은 HK교수 임용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HK사업 종료 시 HK교수의 복무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02. 11)

부 칙(2008. 2. 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수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0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